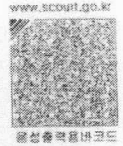


2008. 8. 8.



#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## 제 1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07가합3175 조합활동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청구  
 원 고 임그루  
 피 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사택 에이(A)동 103호  
 케이티 노동조합  
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
 대표자 위원장 지재식  
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봉, 차상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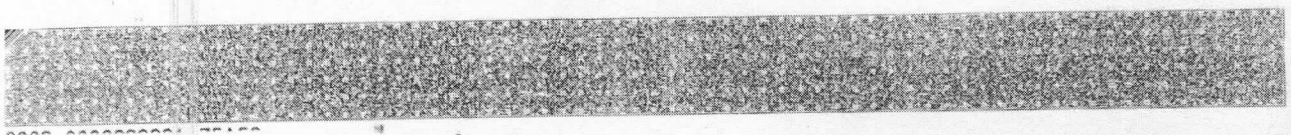
변 론 종 결 2008. 7. 18.  
 판 결 선 고 2008. 8. 8.

### 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피고가 2006. 8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신분보장기금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.



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1978. 10. 2. 체신부 공무원(기술과 시험계 통신기술시보)으로 임용된 후 1997. 9. 8.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(KT) 산하의 상주전화국 시설운영부 고객시설과 전용회선 운용실의 통신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3. 7. 15.경 위 회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.

나. 원고는 2006. 7. 26.경 피고의 규약 제12조, 신분보장규정 제5조에 터잡아 피고에게 신분보장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, 2006. 8. 3.경 '원고가 조합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해임되어 신분보장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.'는 취지의 이유로 위 신분보장기금 청구서가 반려되었다.

**[인정근거]**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1, 2, 3, 을 1-1, 2-2, 3-1, 3-2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.

### 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원고에게 조합활동과 관련한 피해자로서 신분보장기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가 2006. 8. 3.경 원고의 정당한 청구를 반려한 조치는 위법·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,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·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(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로 보임에도 그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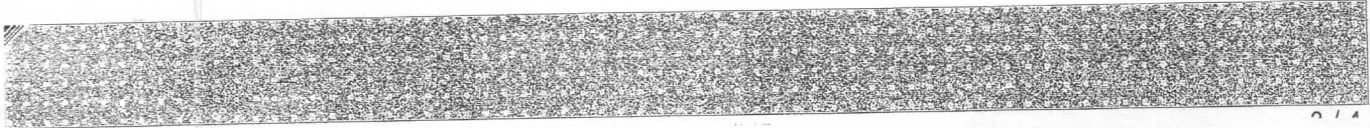
### 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,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굳이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박관근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김기욱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이미주 \_\_\_\_\_





# 정본입니다.

2008. 8. 11.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법원주사보 문 형 기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(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